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'98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63 |
|----------|----|

개정이유

농촌진흥법에 명시된 농업인단체를 포함시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 등 법규와 적합토록하며 제1차 조직개편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.

주요골자

- 농촌진흥법에 적합토록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킴.
-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
-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토록 개정
- 제1차 조직개편으로 조성된 기구 및 직위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함.

개정조례(안)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

-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, 제2호 및 제2조 제3항 제3호, 제5호
-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농촌진흥법 제5조"를 "농촌진흥법 제2조"로, "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"를 "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, 농업경영인회, 여성농업인회"로 한다.

제2조중 "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제1호,제3호,제4호 및 제3항제4호, 제5호"를 "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,제2호 및 제3항제3호, 제5호"로 하고, "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회"를 "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회,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"충청북도농촌지도자회원, 생활개선회원, 4-H후원회원, 농업경영인회원, 여성농업인회원 회비"

제5조제1항중 "충청북도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"를 "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5조제2항중 "10인"을 "15인"으로 하고, "농촌진흥원장"을 "농업기술원장"으로 "지도국장"을 "기술보급부장"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장
2. 4-H후원회장, 농촌지도자연합회장, 생활개선회장,
농업경영인연합회장, 여성농업인연합회장, 각단체별 부회장 1인씩
3. 각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

제5조제4항중 "각조직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"를 "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교육인력팀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임원인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연합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, 농업경영인연합회, 여성농업인연합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- ② 기금은 충청북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.

- ①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제2항중 "지도국장"을 "기술보급부장"으로 하고,

"주무과 탐탐계장"을 "농업진흥과 탐탐업무팀장"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기금결산) ①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